

◇개정이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대한 기본사항 및 영주(永住)자격이 있는 외국인의 권리를 정하고, 영주자격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범죄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492호, 2018. 3. 20. 공포, 9. 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공무원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강제퇴거대상자 등을 발견하더라도 그 사실을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는 통보의무의 면제 범위를 이 규칙에서 명확하게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영주자격 취득요건의 기준, 범위 등 구체화(안 제18조의4 신설)

영주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은 일정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람이거나 강제퇴거 명령을 받았던 경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후 7년이 경과된 사람 등으로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 또는 가계 자산이 중위수준 이상의 소득 또는 자산 등을 갖추고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대한민국에서 계속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춘 사람으로 정함.

나. 외국인 긴급출국정지 보고 절차 신설(안 제39조의6 신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외국인의 긴급출국정지조치를 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다. 통보의무 면제에 해당하는 업무 구체화(안 제70조의2 신설)

공무원이 「형법」상 중대범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의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수사 또는 인권침해 조사·구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강제퇴거대상자 등을 발견하였더라도 외국인의 피해구제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통보의무 면제의 범위를 정하여 외국인의 기본적인 권리 보호를 명확히 함.

라. 영주자격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범죄의 범위 구체화(안 제76조의2 신설)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영주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법무부 제공>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35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9월 2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맹견의 범위)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맹견(猛犬)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태퍼드셔 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제3호”를 “법 제5조제3항제3호”로 한다.

제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법 제8조제2항제3호의2에서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를 말한다.
- ⑤ 법 제8조제2항제3호의2에 따른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에 대한 사육·관리 의무는 별표 1의2와 같다.

제12조제2항 본문 중 “별표 3”을 “제1조의2”로 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을 삭제한다.

별표 6 제2호나목1) 중 “급이(給餌)”를 “먹이 공급”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의 제목 중 “입식”을 “사육”으로 하며, 같은 목 1) 본문 중 “입식하려는”을 “들여오려는”으로 하고, 같은 1) 단서 중 “축종별”을 “가축의 종류별”로, “입식할 수 있다”를 “들여올 수 있다”로 하며, 같은 목 3) 및 4)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에 5) 및 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3호 제목 및 제목 외의 부분 중 “축종별”을 각각 “가축의 종류별”로 한다.

- 3) 가축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질병을 치료해야 한다. 이 경우 질병 치료 과정에서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동물은 해당 동물용의약품의 휴약기간의 2배가 지난 후에 해당 축산물에 동물복지축산농장 표시를 할 수 있다.
- 4) 가축에 질병이 없는 경우에는 항생제, 합성항균제, 성장촉진제 및 호르몬제 등 동물용의약품을 투여(사료나 마시는 물에 첨가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해서는 안 된다.
- 5) 동물용의약품, 동물용의약외품 및 농약 등을 사용하는 경우 각각의 용법, 용량,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입 및 사용내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6) 동물복지축산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에서 검출되는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별표 9 제2호나목1)가)의 (1) 중 “체장(體長, 동물의 코부터 꼬리까지의 길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몸길이”로 하고, 같은 호 라목2)나)의 (1) 중 “체장”을 각각 “몸길이”로 한다.

별표 10 제2호나목4)라) 중 “축종”을 “종류”로 하고, 같은 목 5)의 반려동물 매매 계약서(예시) 중 “축종”을 “동물의 종류”로 하며, 같은 호 바목6)나) 중 “축종”을 “종류”로 하고, 같은 호 아목2) 중 “축종”을 “동물의 종류”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의2]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에 대한 사육·관리 의무(제4조제5항 관련)

- 1. 동물을 사육하기 위한 시설 등 사육공간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출 것
 - 가. 사육공간의 위치는 차량, 구조물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없는 곳에 마련할 것
 - 나. 사육공간의 바닥은 망 등 동물의 발이 빠질 수 있는 재질로 하지 않을 것
 - 다. 사육공간은 동물이 자연스러운 자세로 일어나거나 눕거나 움직이는 등의 일상적인 동작을 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제공하되, 다음의 요건을 갖출 것
 - 1) 가로 및 세로는 각각 사육하는 동물의 몸길이(동물의 코부터 꼬리까지의 길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2.5배 및 2배 이상일 것. 이 경우 하나의 사육공간에서 사육하는 동물이 2마리 이상일 경우에는 마리당 해당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2) 높이는 동물이 뒷발로 일어섰을 때 머리가 닿지 않는 높이 이상일 것
 - 라. 동물을 실외에서 사육하는 경우 사육공간 내에 더위, 추위, 눈, 비 및 직사광선 등을 피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할 것
 - 마. 목줄을 사용하여 동물을 사육하는 경우 목줄의 길이는 다목에 따라 제공되는 동물의 사육공간을 제한하지 않는 길이로 할 것
- 2. 동물의 위생·건강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할 것
 - 가. 동물에게 질병(곰팡이 등 상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수의학적 처치를 제공할 것
 - 나. 2마리 이상의 동물을 함께 사육하는 경우에는 동물의 사체나 전염병이 발생한 동물은 즉시 다른 동물과 격리할 것
 - 다. 목줄을 사용하여 동물을 사육하는 경우 목줄에 묶이거나 목이 조이는 등으로 인해 상해를 입지 않도록 할 것
 - 라. 동물의 영양이 부족하지 않도록 사료 등 동물에게 적합한 음식과 깨끗한 물을 공급할 것
 - 마. 사료와 물을 주기 위한 설비 및 휴식공간은 분변, 오물 등을 수시로 제거하고 청결하게 관리할 것
 - 바. 동물의 행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털과 발톱을 적절하게 관리할 것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맹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맹견의 정의를 신설하고,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을 제공하도록 사육·관리 의무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동물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5502호, 2018. 3. 20. 공포, 9. 21. 시행)됨에 따라, 도사견, 로트와일러 등 맹견에 해당하는 개의 종류를 명시하고, 반려동물이 일상적인 동작을 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크기의 사육공간을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동물복지축산농장의 가축에게는 질병 치료 목적 없이 동물용의약품을 투여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동물복지축산농장에서 생산한 축산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이 검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